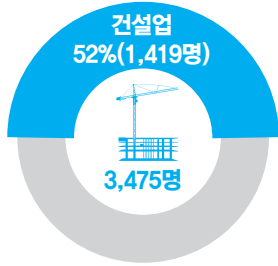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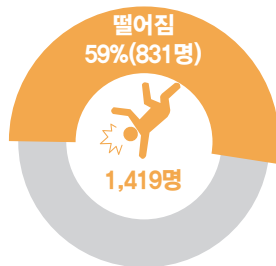
안전신문고를 통한 건설현장 추락위험요인 신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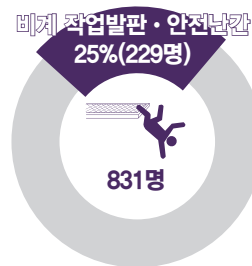
최근 3년간(2017~2019년) 건설업 사망사고 현황



업종



발생형태



기인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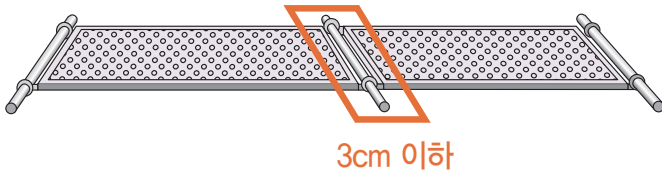
공사규모

- 1 전 산업 업무상 사고사망자의 51%가 건설업에서 발생
- 2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59%는 떨어짐으로 발생
- 3 건설업 떨어짐 사고사망자 중 25%가 비계 작업발판·안전난간 미설치 또는 설치불량으로 발생
- 4 건설업 떨어짐 사고사망자 중 80%가 중·소규모 건설현장(공사금액 120억 미만)에서 발생



비계 작업발판 설치 기준

▶ 작업자의 이동 및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작업발판 설치
작업발판은 비계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,
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이 3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.



- »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 또는 고정
- » 발판 폭은 40cm 이상
- » 발판 간격 틈새는 3cm 이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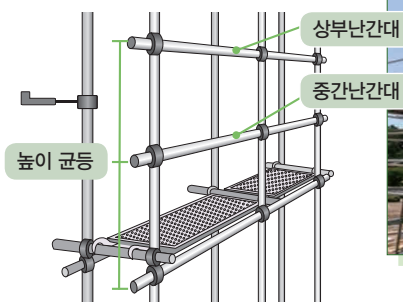


안전난간 설치 기준

▶ 작업자의 작업발판 등 작업공간 밖으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

안전난간은 상부·중간 난간대로 구성되며, 상부 난간대는 작업바닥면으로 부터 90cm 이상, 중간 난간대는 작업 바닥면과 상부난간대 중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.

- » 상부 난간대 90cm 이상
- » 각 난간대 높이 균등



비계 작업발판·안전난간 신고는 이렇게!



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았거나, 고정되어있지 않은 경우 안전 신고!



작업발판
미설치



작업발판 미설치



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상부난간대·중간난간대 중
어느 하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 신고!



중간
안전난간
미설치



작업발판 끝단
안전난간 미설치



추락위험요인 신고 및 처리절차

| 안전보안관

안전보안관
(안전신문고)



지킴이 순찰·특별기획점검
(안전보건공단)



불량현장 감독
(고용노동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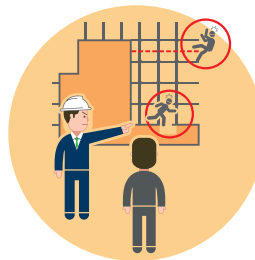
| 고용노동부·안전보건공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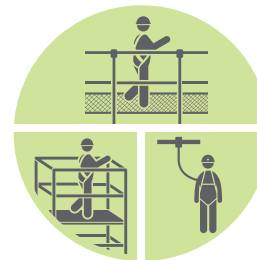
현장 패트롤 출동
(고용노동부·안전보건공단)



취약현장 도착



패트롤 점검 실시
(추락위험요인 확인)



사업장 자율 개선 유도



(고용부 감독실시)

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를 착용합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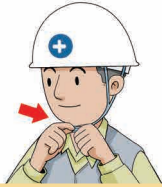
안전은
권리입니다



개인보호구

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·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

안전모



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
또는 근로자가 추락 할 위험이
있는 작업

안전대



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
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
작업

안전화



물체의 낙하충격, 물체의 끼임,
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
위험이 있는 작업



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사망사고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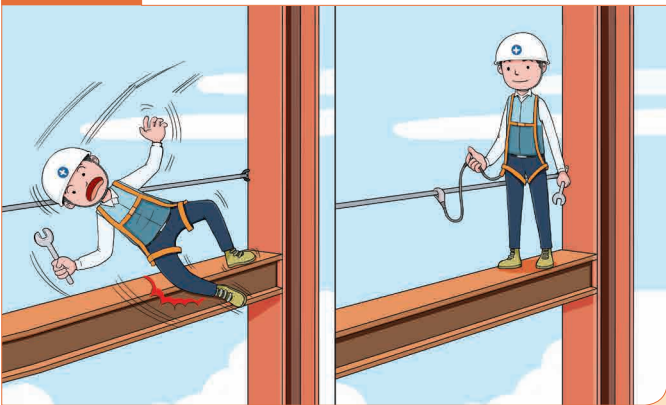
안전모 낙하물로부터 머리보호



안전모 추락, 넘어짐 사고 시 머리 보호



안전대 추락방지



안전화 물건이 떨어질 때 발 보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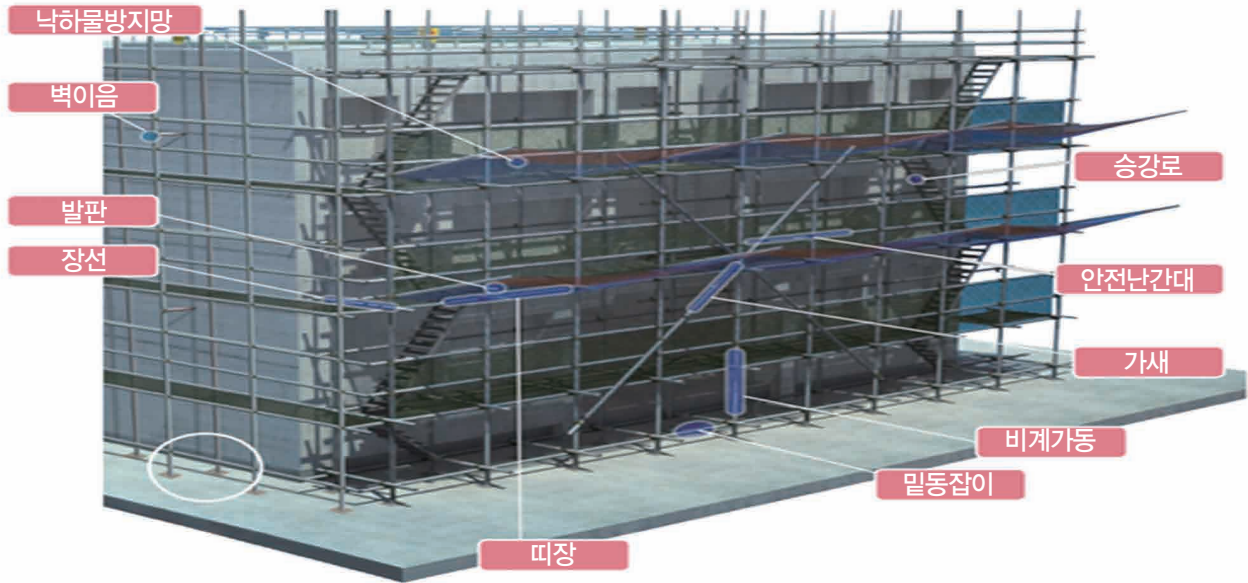
비계의 추락위험요인 (작업발판, 안전난간)



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비계·작업발판을 대상으로 위험현장 신고

비계란

건설현장에서 구조물작업, 미장작업, 도장작업, 조적작업, 볼팅작업, 용접작업 등을 할 때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구조물



비계 위에서 작업 시 주요 추락위험 요인

